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22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3. 02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제3장의 제목 중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”으로 수정하여 ‘주택정책자문단’을 포함함.
- 안 제9조의3제6항 중 “5년”을 “2년”으로 수정하여 자문단 존속기한을 축소 조정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제3장의 제목 중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”으로 함.
- 안 제9조의3제6항 중 “5년”을 “2년”으로 함.

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의3제6항 중 “5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	수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<u>&lt;신 설&gt;</u>	제3장 <u>주거정책심의위원회</u> 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 · 운영 등) ①~⑤ (생 략) ⑥ <u>자문단의 존속기한은 5년</u> <u>으로 한다.</u> ⑦ (생 략)	제3장 <u>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</u> 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 · 운영 등) ①~⑤ (개정안과 같음) ⑥ ----- <u>2년</u> -----. ⑦ (개정안과 같음)

##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”를 “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·운영 등)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·운영 등을 위하여 주택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 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.

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,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.

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촉,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,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.

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문단 회의를

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p>제3장 <u>주거정책심의위원회</u> &lt;신   설&gt;</p>	<p>제3장 <u>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</u> <u>제9조의3(주택정책자문단 설치·</u> <u>운영 등) ① 시장은 주택정책의</u> <u>합리적인 수립·운영 등을 위하</u> <u>여 주택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</u> <u>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 자문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</u> <u>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</u> <u>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</u> <u>고, 부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</u> <u>호선에 의하여 위촉한다.</u></p> <p><u>④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</u> <u>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자문단,</u> <u>실무지원반을 들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해촉,</u> <u>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5조, 제</u> <u>16조,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</u> <u>다.</u></p> <p><u>⑥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년으</u> <u>로 한다.</u></p> <p><u>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</u> <u>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</u> <u>자문단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</u></p>

정한다.